

의안 번호	1742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3.(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5. 3.(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1. 5. 14.(금)

2. 제안설명 요지(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가. 제안이유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나. 주요내용

- 부위원장을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관부서 국장으로 변경
(안 제2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정비(안 제5조, 제7조제1항, 제3항, 제10조)

다. 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미경)

-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위원 구성 요건을 완화함에 따른 조문 수정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 반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거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